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 확대 및 납본 예외 근거 마련 등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63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 확대 및 납본 예외 근거 마련 등(안 제21조) ..	2
2. 부칙 : 적용례의 신설 필요성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0.

다. 회 부 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8월 4일 온라인자료 납본제도가 시행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을 비롯한 온라인제도를 납본받고 있음.

그러나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을 대상으로 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고,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제표준자료번호 온라인자료 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 식별체계가 부여된 자료(웹툰, 웹소설), 공공간행물 인쇄본의 디지털파일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본 협조 의무화 및 납본제외 근거를 명확화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확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

Ⅲ. 검토의견

1.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 확대 및 납본 예외 근거 마련 등(안 제21조)

개정안 제21조는 기존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 외에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콘텐츠식별체제
가 부여된 전자출판물(웹툰·웹소설 등) 등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
도록 하고(제1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납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제3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제6항).

[illegible]

현행	개정안
관에 <u>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u> <u>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공공기관</u>이 제 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 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 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④ (생략)	<u>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u> <u>또한 같다. <후단 삭제> 다만, 온라</u> <u>인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u> <u>용한다.</u> 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 를 부여받은 자료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부 여받은 자료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 위논문으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 작된 자료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콘텐 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 ② ----- ----- <u>공공기관(이하</u> <u>“국가기관등”이라 한다)</u>----- -----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 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 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법 제21조¹⁾는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면서, 온라인자료의 경우에는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자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이는 도서관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나, 온라인자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인 납본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구조임²⁾.

1) 「도서관법」

-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 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여야 한다.
-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납본 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파일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납본한 자에게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고, 납본 자료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 납본 의무 이행에 따른 절차적·재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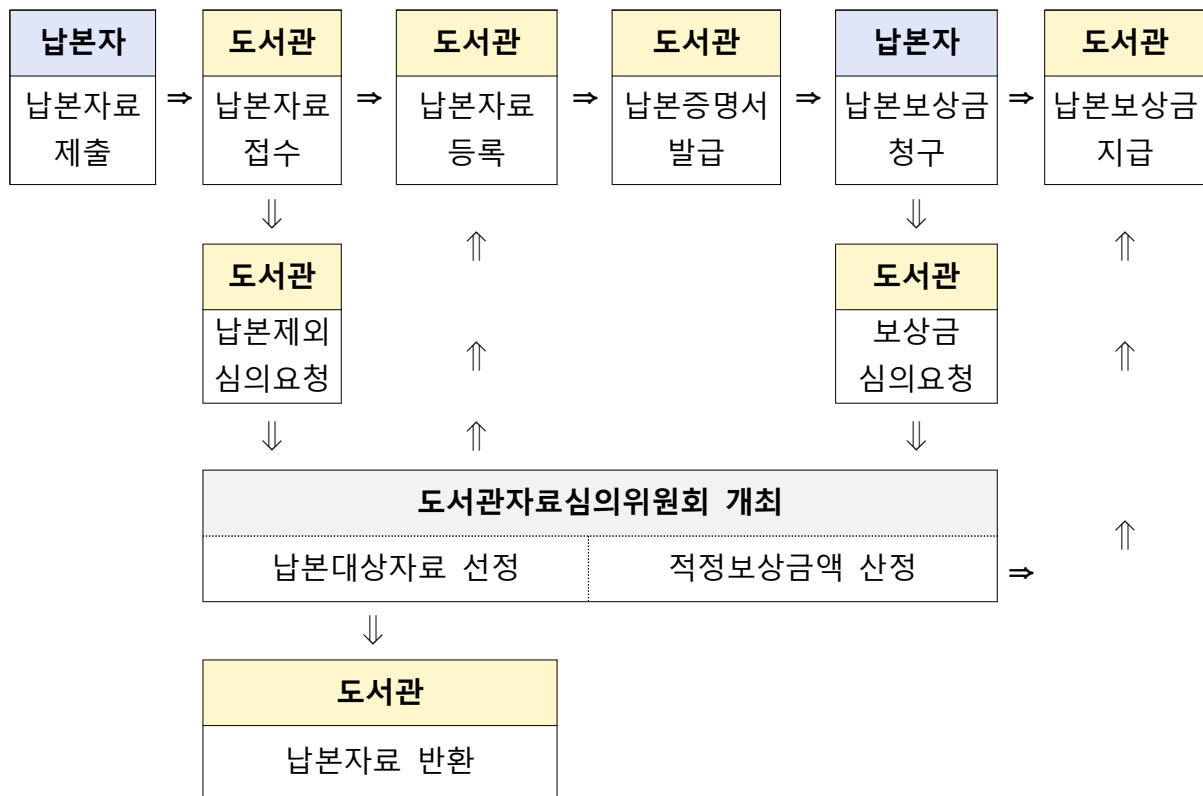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종류·형태·부수, 납본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 도서관자료의 납본 절차 >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현행법은 온라인자료의 경우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³⁾⁴⁾가 부여된 자료로 납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디지털 형식으로만

3)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23-1호)

제2조(정의) 한국문헌번호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하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제작·유통되는 공공간행물, 학위논문, 웹툰·웹소설 등 주요 지식·문화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납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특히, 2016년 온라인자료 납본제도 도입 이후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이 급격히 확대된 상황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납본 체계는 디지털 공공정보와 문화콘텐츠 전반을 포괄적으로 수집·보존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국가 차원의 장기 보존 및 활용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2026년 이후 웹툰·웹소설 등 연재형 전자출판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국제 표준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내 식별체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서, 디지털 시대의 주요 창작물과 공공적 정보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보존 체계에서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4)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국제표준도서번호)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국제표준연속물간행번호)

< 최근 5년간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11월
전자책(웹소설 포함)(건)		23,406	19,371	24,856	29,838	24,353
전자저널(건)		64,025	59,372	84,502	80,016	92,299
공공간행물(건)		27,019	25,682	33,765	27,663	24,001
학위논문(건)		32,883	32,617	34,549	30,027	31,146
웹툰	작품(종)	59	8	46	44	14
	건(화)	192	34	1,272	367	589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실제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는 2013년부터 연재형 전자출판물에 대해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해 왔으나, 2014년 국제 ISBN 관리기구⁵⁾는 연재형 웹콘텐츠가 고정되고 완결된 도서에 부여하는 ISBN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 기관, 관련 협회 등은 대체 식별 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은 2026년부터 연재형 전자출판물에 대한 ISBN 부여를 중단하고, 국가표준콘텐츠식별체계(UCI)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후 2024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웹콘텐츠 분야 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은 UCI 등록관리시

5) 국제 ISBN 관리기구(International ISBN Agency)는 1972년 설립되어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 ISBN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5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온라인자료뿐만 아니라 발간등록번호⁶⁾가 부여된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형태의 학위논문, 콘텐츠식별체계⁷⁾가 부여된 전자출판물 등으로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보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는 국가 연구성과와 공공정보,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장기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온라인자료의 납본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지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간행물의 관리) ①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발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간행물 3부를 각각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연구 개발
2. 식별체계 표준화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4.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5. 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6. 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나 현행법과 같이 시행령에서 정할 수도 있는바,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임.

현행법 체계상 시행령을 통해 납본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도 가능하나, 온라인자료가 그간 법률상 예외 영역으로 규율되어 왔고 국제표준 자료번호 체계 변화로 납본제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최소한의 납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 제21조제3항은 납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관계기관 간 행정적 협력을 통해 납본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21조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이는 내용 또는 형태상 통상적인 도서관자료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률적인 납본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납본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국립중앙도서관규정)에 따라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의무를 전제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납본받지 않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동 규정에 따르면, 내용·형태상 통상적인 도서관자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 소장 자료의 복본자료나 재쇄(중쇄)자료, 단순 편집 자료, 공중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한정된 집단만을 위한 자료, 광고나 상품 정보 위주의 자료, 공공기관 외에서 제작된 학습·수험·활동 관련 온라인 자료 등은 납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⁸⁾.

8)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679호)

제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발행·제작되는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아야 한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본받지 않을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종류

- 가. 내용·형태상 통상적인 도서관자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
- 나. 소장 자료의 복본자료, 재쇄(중쇄)자료
- 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단순 편집한 자료
- 라.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한정된 집단만을 위한 자료
- 마. 광고, 상품 정보를 주로 게재한 자료
- 바. 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제작한 학습·수험·활동 관련 온라인 자료

이와 같이 현행 운영상으로도 국립중앙도서관은 내부 규정과 심의 절차를 통해 납본 제외 자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 처리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내부 규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납본 제외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현행 운영 실태를 법체계상 명확히 반영하여 납본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아울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대량·자동 생성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⁹⁾에서, 모든 도서관자료를 일률적으로 납본 대상으로 수집할 경우 납본 대상의 과도한 확대와 함께 수집·선별 과정에서 행정적·재정적 부담 및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본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됨.

-
- 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납본제외자료로 결정한 것과 같은 유형의 자료
 - 2. 그 외 필요한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수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납본받지 않을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9) 「AI가 9000권 찍어내면, 9000만원 줘야 하는 공공도서관」, 조선일보, 2025. 12. 2.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아래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도서관협회는 학위논문 납본 규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10)에 따른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1조제1항제4호11)의 자구와 관련하여 “콘텐츠 식별체계”¹²⁾를 “콘텐츠 식별체계에 따라 부여된 식별자¹³⁾”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10)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11)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제2215063호)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온라인 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논문으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

1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연구 개발
2. 식별체계 표준화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4.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5. 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6. 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3) 「콘텐츠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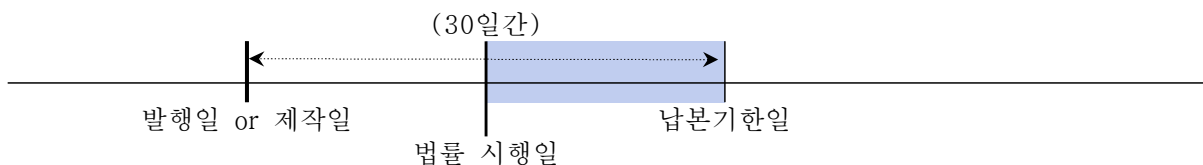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별체계”란 식별 가능한 콘텐츠의 효율적인 관리, 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개별 콘텐츠에 유일한 코드(이하 “식별자”라 한다)를 부여·관리하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 간의 연계표준으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 한국정보통신표준 KICS.OT-10.0058)를 말한다.

2. 부칙 : 적용례의 신설 필요성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21조에 따라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본하여야 하므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도서관자료 및 온라인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였으나, 납본기한인 30일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개정안 시행 이후에 납본하는 경우,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본을 하여야 하는지,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납본을 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예컨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서관자료 또는 온라인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부칙에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384

□ 목적

-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서관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장서를 구축하고, 이를 보존하여 국가지식자원으로 후대에 전승

□ 대상 자료

- (납본대상)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및 가제식 자료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

*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 포함)에 부여받아야 하는 식별번호(도서관법 제23조 제1항)

- (납본제외대상) ▲내용·형태상 통상적인 도서관자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 ▲소장자료의 복본자료, 재쇄(중쇄)자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단순 편집한 자료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한정된 집단만을 위한 자료 ▲광고, 상품정보를 주로 게재한 자료 ▲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제작한 학습·수험·활동 관련 온라인 자료

* (예) 다이어리, 한자연습장, 스티커북, 독후감노트, 실습일지, 노래가사모음집, 단어카드, 퍼즐, 플래시카드, 미리보기 기능의 체험판 온라인 자료, 50면 미만의 온라인 자료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 배경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는 2013년부터 연재형 전자출판물에 대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해 왔으나,

* 국내에서 발간하는 모든 출판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관리하는 국가관리기구

** 문헌 정보와 서지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전 세계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

- 2014년 국제 ISBN 관리기구*에서 연재형 웹콘텐츠의 ISBN 부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우려 표명

* 전 세계 도서에 고유한 식별번호인 ISBN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국제기구

** ISBN은 고정되고 완결된 도서에 부여하는 식별체계

□ 추진 경과

- ('14년) 국제 ISBN 관리기구에서 연재형 웹콘텐츠 ISBN 부여 부적합 판단

- ('19~'21년) 문체부, 관련 협회 등과 대체 식별체계 논의 및 의견수렴 등

- ('22년) 국립중앙도서관(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에서 '26년부터 연재형 전자출판물의 ISBN 부여 제외 결정, 문체부는 국가표준식별체계인 UCI 도입** 결정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서지표준센터에서 구성하여 운영

** UCI 표준식별체계 도입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수행

- ('24년) 한국저작권위원회(UCI 총괄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웹콘텐츠 UCI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 국립중앙도서관은 UCI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25년) 상반기 시범 운영,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

〈한국문헌번호운영위원회〉

- (기능) 한국문헌번호 운영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 기능
- (심의) 번호의 체계 및 구성 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보급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위원 10인 이내, 부처 공무원 중 출판·도서관 관련 담당,
출판계·도서관계·표준화 업무 분야 및 관련 학계 인사 등